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11.

국토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7월 25일, 이견태의원 등 12인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7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417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2024. 8. 21.)

상정 · 제안설명 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
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(2024. 11. 26)

상정 · 축조심사

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(2024. 12. 3.)

상정 · 축조심사

제423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(2025. 3. 11.)

상정 · 축조심사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
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(2025. 9. 1.)

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2025. 9. 25.)

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축조심사 · 찬반토론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국회의원 이견태)

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부담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,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.

그런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도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,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도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광역버스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곽현준)

가. 현행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

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

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,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

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도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운행하는 경우가 있으나,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.

더욱이 2023년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범위에 ‘대도시권의 같은 권역 내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간에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’가 포함되면서 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,

이에 따라 현재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서비스로 수도권 5개 지역(경기도 시흥시, 광주시, 화성시, 용인시, 수원시), 13개 노선이 운영중이며, 2024년 7월 기준 총 이용자수는 20,044명으로 월별 이용자 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.

이에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동일하게 대도시권 내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

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, 동일한 광역교통 수요를 담당하는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도시 입주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다만, 이 법의 시행일을 ‘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’로 하였는데, 광역버스운송사업 노선 확대에 따른 예산 반영 등 관계기관의 행정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)

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

- ※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에
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.